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입주자모집공고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5.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수원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과밀억제권역)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5.16.(목)	2024.05.27.(월)	2024.05.28.(화)	2024.05.29.(수)	2024.06.04.(화)	2024.06.08.(토)~ 2024.06.14.(금)	2024.06.17.(월)~ 2024.06.19.(수)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포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http://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6.(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5.27.(월)	2024.05.28.(화)	2024.05.29.(수)	2024.06.04.(화)	2024.06.08.(토)~ 2024.06.14.(금)	2024.06.17.(월)~ 2024.06.19.(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 031-234-9010</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및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II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14372호(2024.05.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 총 162세대

[특별공급 81세대(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29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수)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222	01	074.7362A	74A	74.7362	26.4173	101.1535	60.9882	162.1417	17.2629	54	6	5	9	1	5	26	28	2
	02	074.7743B	74B	74.7743	26.6347	101.4090	61.0193	162.4283	17.2717	54	6	6	10	2	4	28	26	2
	03	084.8465A	84A	84.8465	28.4273	113.2738	69.2387	182.5125	19.5983	27	2	2	5	1	3	13	14	1
	04	084.6396B	84B	84.6396	28.6658	113.3054	69.0699	182.3753	19.5505	27	2	3	5	1	3	14	13	1
	합 계										162	16	16	29	5	15	81	81

## ■ 주택형 표시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74.7362A	074.7743B	084.8465A	084.6396B
약식 표기	74A	74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공급금액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라인	구분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종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4.12.20	25.05.20	25.11.20	26.05.20	26.11.20	27.05.20	
74A	102동	1, 2호	3	2	174,115,400	424,184,600	-	598,300,000	29,915,000	29,915,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179,490,000
			4~5	4	176,589,000	430,211,000	-	606,800,000	30,340,000	30,34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182,040,000
			6~10	10	182,351,200	444,248,800	-	626,600,000	31,330,000	31,33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187,980,000
			11~15	10	185,785,200	452,614,800	-	638,400,000	31,920,000	31,92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191,520,000
			16~20	10	189,219,200	460,980,800	-	650,200,000	32,510,000	32,51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65,020,000	195,060,000
			21~25	10	192,653,200	469,346,800	-	662,000,000	33,100,000	33,1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198,600,000
			26~29	8	196,058,100	477,641,900	-	673,700,000	33,685,000	33,685,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202,110,000
74B	101동	3호	3	1	171,547,000	418,453,000	-	590,000,000	29,500,000	29,5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4~5	2	174,047,500	424,552,500	-	598,600,000	29,930,000	29,93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179,580,000
			6~10	5	179,833,600	438,666,400	-	618,500,000	30,925,000	30,925,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185,550,000
			11~15	5	183,264,600	447,035,400	-	630,300,000	31,515,000	31,515,000	63,030,000	63,030,000	63,030,000	63,030,000	63,030,000	63,030,000	189,090,000
			16~20	5	186,695,500	455,404,500	-	642,100,000	32,105,000	32,105,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192,630,000
			21~25	5	190,126,500	463,773,500	-	653,900,000	32,695,000	32,695,000	65,390,000	65,390,000	65,390,000	65,390,000	65,390,000	65,390,000	196,170,000
			26~29	4	193,557,400	472,142,600	-	665,700,000	33,285,000	33,285,000	66,570,000	66,570,000	66,570,000	66,570,000	66,570,000	66,570,000	199,710,000
84A	101동	2호	3	1	172,506,500	420,793,500	-	593,300,000	29,665,000	29,665,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177,990,000
			4~5	2	174,978,000	426,822,000	-	601,800,000	30,090,000	30,09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180,540,000
			6~10	5	180,764,100	440,935,900	-	621,700,000	31,085,000	31,085,000	62,170,000	62,170,000	62,170,000	62,170,000	62,170,000	62,170,000	186,510,000
			11~15	5	184,195,000	449,305,000	-	633,500,000	31,675,000	31,675,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190,050,000
			16~20	5	187,625,900	457,674,100	-	645,300,000	32,265,000	32,265,000	64,530,000	64,530,000	64,530,000	64,530,000	64,530,000	64,530,000	193,590,000
			21~25	5	191,086,000	466,114,000	-	657,200,000	32,860,000	32,860,000	65,720,000	65,720,000	65,720,000	65,720,000	65,720,000	65,720,000	197,160,000
			26~29	4	194,516,900	474,483,100	-	669,000,000	33,450,000	33,45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84B	101동	1호	3	1	201,433,300	486,566,700	-	688,000,000	34,400,000	34,4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06,400,000
			4~5	2	204,244,000	493,356,000	-	697,600,000	34,880,000	34,88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209,280,000
			6~10	5	210,743,800	509,056,200	-	719,800,000	35,990,000	35,99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215,940,000
			11~15	5	214,608,500	518,391,500	-	733,000,000	36,650,000	36,65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219,900,000
			16~20	5	218,473,200	527,726,800	-	746,200,000	37,310,000	37,31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74,620,000	223,860,000
			21~25	5	222,337,900	537,062,100	-	759,400,000	37,970,000	37,970,000	75,940,000	75,940,000	75,940,000	75,940,000	75,940,000	75,940,000	227,820,000
			26~29	4	226,202,600	546,397,400	-	772,600,000	38,630,000	38,63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231,780,000
84B	101동	1호	3	1	199,935,200	483,764,800	-	683,700,000	34,185,000	34,185,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205,110,000
			4~5	2	202,742,600	490,557,400	-	693,300,000	34,665,000	34,665,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207,990,000
			6~10	5	209,234,500	506,265,500	-	715,500,000	35,775,000	35,775,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214,650,000
			11~15	5	213,094,600	515,605,400	-	728,700,000	36,435,000	36,435,000	72,870,000	72,870,000	72,870,000	72,870,000	72,870,000	72,870,000	218,610,000
			16~20	5	216,954,700	524,945,300	-	741,900,000	37,095,000	37,095,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74,190,000	222,570,000
			21~25	5	220,814,800	534,285,200	-	755,100,000	37,755,000	37,755,000	75,510,000	75,510,000	75,510,000	75,510,000	75,510,000	75,510,000	226,530,000
			26~29	4	224,645,700	543,554,300	-	768,200,000	38,410,000	38,41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76,820,000	230,46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 등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주상복합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지정기간에 납부(입주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입주 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 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4A	74B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2
	장애인	1	1	1	4
	중소기업 근로자	2	1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50%)	3	1	2	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2	3	1	7
신혼부부 특별공급	9	10	5	5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1	5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3	3	15
합 계	26	28	13	14	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 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당첨),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11">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 colspan="2">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tr> <tr> <td colspan="2">※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 colspan="2">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 남부보훈지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li> </ul> </li> </ul>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름

###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IV-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p>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ul> </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li> </ul>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ul> </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li> </ul> <p>■ 소득기준</p>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5.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액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액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기준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p>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p> <p><b>토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li> </ul>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7호(2024.03.25.)]에 따릅니다.			
<p>■ <b>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b>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7호(2024.03.25.)]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li> <li>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균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li> <li>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li> <li>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li> <li>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li> </ul>			

####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름				

#### IV-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ul>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li> </ul>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li>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확인 시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2024.05.16</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p>•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130% 이하</td> <td>~9,105,862원</td> <td>~10,723,007원</td> <td>~11,407,592원</td> <td>~12,432,267원</td> <td>~13,456,941원</td> <td>~14,481,615원</td> </tr> <tr> <td>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130% 초과 160% 이하</td> <td>9,105,863원~ 11,207,214원</td> <td>10,723,008원~ 13,197,547원</td> <td>11,407,593원~ 14,040,114원</td> <td>12,432,268원~ 15,301,251원</td> <td>13,456,942원~ 16,562,389원</td> <td>14,481,616원~ 17,823,526원</td> </tr> <tr>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1,207,215원~</td> <td>13,197,548원~</td> <td>14,040,115원~</td> <td>15,301,252원~</td> <td>16,562,390원~</td> </tr> <tr> <td>1인 가구</td> <td>160% 이하</td> <td>~11,207,214원</td> <td>~13,197,547원</td> <td>~14,040,114원</td> <td>~15,301,251원</td> <td>~16,562,389원</td> </tr> <tr> <td></td> <td></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1,207,215원~</td> <td>13,197,548원~</td> <td>14,040,115원~</td> <td>15,301,252원~</td> <td>16,562,390원~</td> </tr> </tbody>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5.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5.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부동산가액 총계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b>■ 자산기준</b>																	
• <b>부동산가액 산출기준</b>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b>자산보유기준</b>																	
구분	기준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li> <li>-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 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 [별표 3])**

- ①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V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4">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 <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②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됩니다.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③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을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20m<sup>2</sup>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 ☞ (적용) 멀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멀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증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적용) 무허가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m<sup>2</sup>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소형·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m<sup>2</sup>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2호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미계약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미달 세대를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둘러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적용) 주택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 (적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되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래 신도한 취득가격이 기준, 2024년 취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해당됨.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VI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5.2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견본주택 접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 031-234-9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4.06.04.(화)</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2024.05.28.(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ul>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

	기타지역 :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2순위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li> </ul>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p>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등의</li> <li>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조회기간 : - 2024.06.04.(화) ~ 2024.06.13.(목) (10일간)</li> <li>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일시 : - 2024.06.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일정	서류 제출 및 검증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건본주택</li> <li>-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li> <li>☎ 031-234-9010</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li> </ul>
	일반공급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유의사항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표1>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li><li>'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ul>
	<input type="radio"/>	무주택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견본주택 비자, 인터넷청약(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ul>
	<input type="radi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견본주택 비자,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li></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용도: 주택공급신청용(당첨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li>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li></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ul>
	<input type="radio"/>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전세사기 피해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또는 25년 이상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li>※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li> </ul> </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li> </ul>		
	○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세대원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전세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낙찰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 특별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li> <li>※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li> </ul>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li> <li>'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자</li> </ul>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li> <li>•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li> </ul> </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자)</li> </ul>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li> </ul>			
	○	건강보험자격특별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li> <li>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및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기준 발급) 제출)</li> <li>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li> <li>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a href="https://www.realtyprice.kr:447">https://www.realtyprice.kr:447</a>)</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li> <li>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3] 참조)</li> <li>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li> <li>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3] 참조)</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및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기준 발급) 제출)</li> <li>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14페이지 자산보유기준 및 세부내역표 참고)</li> <li>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a href="https://www.realtyprice.kr:447">https://www.realtyprice.kr:447</a>)</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하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전전년도 제무재표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④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자산입증 서류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등기소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표4>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여 세대원 전원에 대해 각각 발급)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 부동산 확인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소유 부동산의 금액 확인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대장</li> <li>축산업 허가증</li> <li>토지이용계획확인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li> <li>지자체 축산과</li> <li>토지이음</li> </ol>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ul> </li> <li>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인터넷등기소</li> <li>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로 됨)</li> </ol>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무주택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li> </ul>
	<input type="radi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주택공급신청용(당첨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li> </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li> </ul>
	<input type="radio"/>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input type="radio"/>			본인 또는 세대원	<p>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p> <p>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p> <p>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p> <p>-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li> <li>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ol> <p>전세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p> <p>※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p>
	<input type="radio"/>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radio"/>		낙찰증빙서류		
	<input type="radio"/>		등기사항 증명서		
	<input type="radio"/>		채권자 확인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 등실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가점제 추가서류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li> <li>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li>※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ul>
	○	출입국사실증명서			<p>※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p>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li> <li>※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청약자 본인 발급용)]</li> <li>단 대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li> <li>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li> <li>“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VIII

##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2024.06.17.(월) ~2024.06.19.(수)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li><li>※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홈페이지(<a href="http://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a>)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li></ul>	☎ 031-234-901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일정은 정당계약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li></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li><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ul>
	<input type="radio"/>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50%씩 균등 부담</li></ul>
	<input type="radi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접수 장소에 비치</li><li>비규제지역 6역 이상 주택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li></ul>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자격 확인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ul>
	<input type="radio"/>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li></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li><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ul>
	<input type="radi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li></ul>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li><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구분(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억 초과 ~10억 이하	150,000원	75,000원	전 계약자 동일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구분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증서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 기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www.e-revenuestamp.or.kr">www.e-revenuestamp.or.kr</a> )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좌	KB국민은행	040001-04-221284	(주)무궁화신탁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현장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 계좌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점 유의 하시어 각 대금 계좌를 확인 하시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010101010101'으로 기재)

## ■ 계약 시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무순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이자,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에게 요구 및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전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 시 매각수별 인지세 부과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 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약정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시행수탁자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시행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취급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시행위탁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및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 사전방문 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일 : 2027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확정 입주지정기간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입주예정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확정 입주지정기간 내 실입주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해야 함.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확정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를 적용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제세공과금은 잔금납부일로부터, 관리비는 실입주일이나 키불출일 중 빠른날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대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10% 유보금은 전체 사용검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10% 미납하여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대지권은 제외 됩니다. 잔금 10% 미납시 담보대출 전환은 불가합니다. 잔금 10%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 방재실 / 경비실 / MDF실 / 주민회의실 & 다목적홀 / 북카페

## ■ 아파트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IX**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증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4.12.20	입주지정일	
74A	15,609,000	1,560,900	1,560,900	12,487,200	
74B	15,653,000	1,565,300	1,565,300	12,522,400	
84A	17,479,000	1,747,900	1,747,900	13,983,200	
84B	17,490,000	1,749,000	1,749,000	13,992,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40001-04-221271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 계좌가 상이하고,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 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등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드레스룸, 불박이장, 팬트리 등은 확장공사 포함 품목으로 비 확장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피난공간 확장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공 또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 세대 비 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 벽이 단열 두께만큼 돌출 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홍보물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의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경우 등등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 및 성능 위주 심의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거하여 실외기실과 별도의 피난공간(15층까지는 탈부착형 안전난간 설치, 16층 이상은 고정형 안전난간 설치)을 계획하였으며 피난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철제문이 설치되어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피난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 장소가 아니며, 각종 물건 적재 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여 위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피난공간에 설치된 안전 바는 고리타입 등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 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의 형태, 두께 및 위치는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 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 ·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어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될 수 있고,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고(일부 유상옵션 반영),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입주 후 실외기실에 칸막이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입주자가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방수형 열감지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많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사용 시 환풍기 작동 또는 창호 개방 등을 통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 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 난방 구간으로 계획된 다용도실과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을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구 배치 시 창문과의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 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동의 필요)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절약기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결정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설치위치 및 수량	74A	74B	84A	84B	비고
에 어 컨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시스템 에어컨 4개소 (거실+침실1,2,3)	6,000,000	6,000,000	6,600,000	6,600,000	
		일반형 시스템 에어컨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	-	7,500,000	7,500,000	
		프리미엄형 시스템 에어컨 4개소(거실+침실1,2,3)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프리미엄형 시스템 에어컨 5개소(거실+주방+침실1,2,3)	-	-	9,800,000	9,800,000	

-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배관 길이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 옵션 미선택 시 설치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프리미엄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안방의 매립형 냉매배관(기본제공)과 드레인,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텐드형 및 벽걸이형 등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를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품번 및 실내기 판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별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시공 상의 이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에는 자동식 개방루버를 설치하였습니다.(단, 실외기 사용 시 개폐 여부를 확인하시어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의 도어 및 그릴,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의 사양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마감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설치위치 및 수량	74A	74B	84A	84B	비고
마감	디자인 벽체 마감	선택 1 벽면 디자인 월판넬(LPM+PET)+픽처레일	3,500,000	3,200,000	3,500,000	3,500,000	택1
		선택 2 벽면 디자인 월판넬(LPM+PET)+픽처레일+히든 도어	6,500,000	6,200,000	6,500,000	6,500,000	
	바닥 마감	선택 1 대형 포세린 타일(거실·주방·복도·현관)+광폭경면강마루(침실1,2,3)	2,700,000	2,700,000	3,100,000	3,100,000	택1
		선택 2 대형 포세린 타일(현관) + 광폭경면강마루(전실)	1,200,000	1,200,000	1,300,000	1,300,000	
	주방 업스타일링	선택 1 주방 벽/상판 대형 세라믹 타일	3,600,000	3,200,000	3,800,000	3,300,000	택1
		선택 2 주방 벽/상판 대형 세라믹타일+플랩형 상부장(하부간접조명)+서랍형하부장+싱크수납장+독립형후드+확장아일랜드+고급주방 액세서리	5,600,000	5,100,000	5,900,000	5,100,000	
	욕실 업스타일링	공용+부부 욕실 벽/바닥 포세린 타일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벽체 마감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벽지가 시공되고, 아트 월에는 포세린 타일(600\*600)이 설치됩니다.
- 히든도어 설치 시 침실 바닥 도어 하부에 '도어 캐처'가 설치됩니다.(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등 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히든도어 설치 시 손 끌임 방지가 설치될 수 있으며,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월 판넬 옵션 선택 시 별도의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광폭 강마루 (145\*1200) 마루의 폭은 ±5mm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바닥마감 옵션 미 선택 시 일반 강마루(95\*800)가 설치되고, 현관 바닥에는 포세린 타일(600\*600)이 설치됩니다.
- 주방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벽면은 도기질 타일(300\*600), 상판은 MMA가 설치됩니다.
- 주방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상 / 하부장은 여닫이 목문으로 설치되고, 상부장 하부 간접 조명은 삭제, 일반형 주방 액세서리, 일반형 아일랜드가(확장형과 사이즈 상이) 설치됩니다.

- 주방 업스타일링 옵션 선택 시 쿡탑과 렌지후드의 위치는 아일랜드에 설치됩니다.
- 주방 업스타일링 옵션 선택 시 플랩형 상부장의 하부간접조명 ON/OFF 스위치의 형태와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는 제조사의 사정으로 품번 변경 및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벽면은 도기질 타일(300\*600), 바닥은 자기질 타일(300\*300)이 설치됩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판넬 및 타일의 나누기(메지) 및 배치 등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가구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설치위치 및 수량	74A	74B	84A	84B	비고
가구	현관 중문	여닫이 중문(74B) / 3연동 중문(74A, 84A, 84B)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현관 팬트리 시스템 가구	가구 도어 + 시스템 가구	-	890,000	-	-	
	침실 붙박이장	침실 2 붙박이장	1,120,000	1,120,000	1,300,000	1,300,000	중복 선택 가능
		침실 3 붙박이장	1,120,000	1,120,000	1,300,000	1,300,000	
	ドレス룸 업스타일링	붙박이장 + 파우더장 + 천정 라인 매입등	1,400,000	-	1,200,000	1,20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 선택 시 날개벽이 설치됩니다.
- 74B 타입은 현관 팬트리 시스템 가구 옵션 미 선택 시 가구도어는 설치되며, 시스템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은 각각 선택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파우더장 + 가구도어 + 시스템 가구 + 기본 직부등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업스타일링 옵션 선택 시 시스템가구와 가구도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붙박이장 설치)
- 84B타입은 드레스룸 업스타일링 옵션 선택 시 파우더장 위치는 변경 됩니다.
- 본 공사 시 파우더장에 설치된 콘센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나누기 및 배치 등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가전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설치위치 및 수량	74A	74B	84A	84B	비고
가전	복합형 환풍기	복합형 환풍기(공용·부부욕실 2개소)	750,000	750,000	750,000	750,000	
	전동 빨래 건조대	전동 빨래 건조대(안방·발코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인덕션	인덕션 3구_ 쿠쿠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택1
		인덕션 3구_ 일렉트로록스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전기오븐레인지	전기 오븐 레인지(주방)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식기세척기	14인용 식기세척기(걸레받이 부착용)	830,000	830,000	830,000	83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공용+부부욕실)	800,000	800,000	800,000	800,000	
	냉장·냉동·김치냉장고	키친핏 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콘장	5,500,000	5,500,000	5,200,000	5,20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쿡탑은 3구 하이라이트가 설치되며, 주방에는 별도의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제품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복합형 환풍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옵션 미 선택 시 공용욕실에는 일반 양변기, 부부욕실에는 일반 양변기+분리형 비데가 설치됩니다.
-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 타입 별로 키 큰 장의 사이즈는 상이합니다.
-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기본 냉장고장의 키 큰 장의 설치 유무와 사이즈는 세대 타입 별로 상이합니다.
- 설치제품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품번 변경 및 판넬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디자인 조명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설치위치 및 수량	74A	74B	84A	84B	비고
조명	디자인 조명	선택 1 거실 우물천장 라인 매입등(밝기+색온도조절)+주방 라인 매입등+식탁 레일등(84A, B타입만 적용)	1,700,000	1,700,000	2,200,000	2,200,000	택1
		선택 2 거실 우물천장 라인 매입등(밝기+색온도조절)+주방 라인 매입등+식탁 레일등(84A, B타입만 적용)+실링팬	2,400,000	2,400,000	2,900,000	2,90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의 식탁 레일등은 84A,B 타입만 선택 가능합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조명 옵션 미 선택 시 거실 기본 직부등, 주방 기본 매입등, 기본 각도조절가능 식탁등이 설치됩니다.
- 디자인 조명 옵션의 거실 우물천장 라인조명은 디밍 스위치로 밝기 +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 조명 옵션 미 선택 시 디밍 스위치는 미설치 됩니다.
- 조명의 위치는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의 실링팬은 본 공사 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나누기 및 배치 등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계좌	납부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납부일정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미입금 시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납부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 옵션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 옵션품목은 시공사 진흥기업(주)에 의해 공급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공급자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시행위탁자 대선건설(주) 및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추가 선택 옵션 품목과 관련하여 면책됨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사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

##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홍보자료와 입주자모집공고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하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 예정이나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단지명 및 BI 디자인은 향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대한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 공유시설물 인근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층 휴게가든 등).
- 상가방문자용 주차장은 지하1층 일부 Zone에 구획하였고 주거용 주차장은 지하1층 일부 Zone에서 지하5층까지 계획하였으며 운영 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설로 사업주체(시공사 포함)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시공사 포함)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입주 시 별도 고지 예정)

- 입주예정시기는 공사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인허가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될 경우 입주 예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으며 특히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설 등은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기타공용, 계약면적 등은 단지 공용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 도로 등 기타시설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 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 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 등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건축(변경)허가 등] 내용에 따라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 레벨(도로, 보행로 등)에 따라 인접한 단지 시설 등의 계획 레벨, 길이, 형태, 종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단지 주출입구 및 보행자/비상도로 출입구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차량동선 및 비상차량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 등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을 득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고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잔디 등의 낮은 관목이 식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소방서 점검 시 문제가 되는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용벽의 종류 및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경관조명, 단지 조명 및 사인, 입주자 공동시설, 단지 내 시설물(저수조, 펌프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실)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시방서 및 마감자재서류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을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표현된 참고용 자료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색채 디자인 등의 외부조명 및 적용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단위세대 평면도는 주동 동호별 라인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어 이는 배제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 건축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 관련 인허가기관에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시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을 전입신고 현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옥상 간판은 수원시청 도시디자인과(광고물팀) 및 기타 광고물은 팔달구청 건축과(광고물 관리팀)에서 관련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사업주체에서 선임하고 인계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 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초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는 분양계약자의 1/2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분양계약자에게 요청(통지)할 예정이며, 분양계약자들은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사업주체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 학교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입주 시점에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로 예상되는 취원대상자는 기존 유아배치시설에 배치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학교(군)는 팔달초등학교 예정입니다.
- 중학교는 동부중학군(동성중, 동수원중, 매원중, 산남중, 수원원일중, 원천중, 창용중)에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과 포함)는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 상기 학생 배정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증가 예상되는 학생 수를 파악하여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 예정 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XI

## 단지 여건 사항

###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주변 남측 중부대로(40~50m 도로), 서측 중부대로(20m 도로), 북측 권광로(10m 도로 및 차량진입로) 인접으로 인한 주동의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동측에 동수원 한방병원 주차타워 및 장례식장이 입지해 있어 소음 및 차량 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시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 제기 및 보상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DA(콘크리트구조물), 조경석 또는 조경 등의 시설물이 변경되거나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 조정 등으로 본 건물과 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준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남측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개 공지 및 부지 내 도로의 관리 및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적도와 실제 측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 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사용승인 시 동측 SK브로드밴드 및 동수원 한방병원 민원 협의과정에서 담장이 신설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철거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전신주가 위치해 있으며 부지 내로 전신주 위치가 이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 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부대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 등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 로고 사인(크기 및 위치 등),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꼭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 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및 주동 출입구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하여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 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1~2층) 외벽면 마감은 친환경 수성페인트, 지정 컬러 노출콘크리트 마감이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지정 금속도장 마감으로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입면 및 옥상에 표현된 줄눈 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조경 식재 수종, 형태 등은 인허가 및 실시공 시 관련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장식 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일부 구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옥외 시설물(자전거 보관소 등)은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건축(변경)허가, 건축 심의조건 등 포함]조건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어 견본주택 모형 또는 각종 홍보물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2층에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민 편의 및 보안, 생활 필수시설, 여가 등을 위한 시설(CCTV,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 보관소, 부대시설, 장애인 슬로프 등)로 인한 소음 및 빛 반사, 조망 저해,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는 지상1층 배면 DA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등이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 DA 및 쓰레기 보관소,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동별 쓰레기 보관소 이용 거리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조명, 배기덕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소음(풍절음) 등에 사생활이 간접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관련 규정에 의거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침 및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 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부의 측량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옹벽 및 DA(콘크리트마감), 조경석,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현장 여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 설치된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은 시공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구조, 위치,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간섭, 소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소화수조 및 펌프가 설치되어 최상층 및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이상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시공됨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경관조명 계획 및 시설물 계획은 경관 심의 또는 수원시 협의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 택배 보관소는 101동 지상1층 경비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설치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실외기는 외부, 지상 1층 또는 지상3층 실외기 설치공간에 설치 예정으로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공개공지에서 1층 주동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까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게 계획하였으나 주변 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 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는 1층 상가 동측(118호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SK브로드밴드 사이)
-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정차구간(1층), 구급차주차면(1층)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1,3층)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 및 성능위주심의 가이드라인 규정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단지 내 3개소(전면 공개공지 2개소, 배면 단지 내 도로 1개소)에 소방 차량의 진입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한 소방차 정차구간을 계획하였으며, 소방차의 부지 내 용이한 진입을 위해서 낮은 경계석을 설치하고 예상 진출입로에는 불라드(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낮춰진 경계석 부분은 관할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점용료 발생)를 득하여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 성능위주심의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인근에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세부적인 위치는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 단지 내 점자블럭 위치, 개소, 장애인램프 및 경사로 등은 주변 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규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경 시설 등으로 처리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의 크기 및 높이 등은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단지 특정동(102동)의 지붕 층에 TV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고 설치 위치에 대한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행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굽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의 수종 수량, 각종 시설물 배치 및 포장 패턴 등은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조경, 공개공지 및 주동 배치형태 등의 차이로 인하여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제한되며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방법은 입주안내문에 안내 예정이며 입주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착공 신고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 상 단지 내 미술장식품을 설치 예정이며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조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심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욕실, 발코니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부 설비와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대 당 1개소 설치되며 위, 아래층 교차 시공되고 시공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황시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평시에는 참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누수, 쟁간소음, 내부 단차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의 사유로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 공간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출입구 흘, 옥상, 커뮤니티 등의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로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 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3층 옥상정원 포함)은 사유지가 아니므로 인접 세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단위세대 사생활 침해가 없는 시야각을 고려하여 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선 후퇴 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주차장, 물건 적치, 울타리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 부대 ·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함)

- 부대 · 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방재실, 경비실, MDF실, 주민회의실 및 다목적 흘, 북 카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에는 내부 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 구성 및 실 배치형태, 내부 구조, 실외기 설치 공간, 외부 디자인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에는 내부 표현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이미지로 설계도서 상 공간만 제공합니다.
- 부대 · 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에 설치 예정인 시설물은 향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창호,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은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 · 복리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 환기에 불리할 수 있으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부대 · 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하며,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 · 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 설치 위치는 인허가기관 협의 및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에 따라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 동의 세대 인근 공용부 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 상실, 냄새 및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는 본 건물 지하1층 EPS/TPS 실, 지상15층 EPS/TPS 2개소에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층 엘리베이터 훌 천정면 및 지하주차장 상부에 송수신용 안테나가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부대 · 복리시설(주차장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위치는 견본주택, 설계 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부대 · 복리시설(주차장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사용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의 천정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및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3m	4.5m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5층, 총 215대수(아파트 193대, 균린생활시설 22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층에 조업 및 택배차량 주차장을 1대 계획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균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4.5m, 지하1층 높이 2.3m로 전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단,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성능 위주심의 가이드라인 규정에 적합하게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계획하였으며 추후 관계 법령 개정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 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주차면은 관련법에 의거 주차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입주 후 주차장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 간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발생되는 다툼 등의 문제 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차 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고 겨울철 및 여름 장마 시 차량을 통해 유입된 눈 또는 빗물로 인하여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전용 엘리베이터(1대)는 지하1층 ~ 지상2층 까지만 운영되며 전용계단은 지하2층~지상2층까지 계획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또는 교목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동 또는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차후 분양 전 일부 환경 개선(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와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입주자 공사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및 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I

## 설계 관련 주요사항

### ■ 단위세대 및 설계 관련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시설물(쓰레기보관소, DA, 단지 경계부 용벽 등) 및 마감재는 본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현장 여건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수량,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이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 DA와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입주민 편의 및 보안, 생활 필수시설, 여가 등을 위한 시설(CCTV,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 보관소, 부대·복리시설 등)로 인한 소음 및 빛 반사, 조망 저해,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계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계획상의 차선, 차단기 등 세부 사항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위치, 높이, 재질 및 형태, 색상 등이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 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훌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훌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창호, 가구, 기구, 마감재 및 색상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승강로 및 3층 옥외 실외기 설치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 현관홀의 출입동선, 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동별 위치에 따라,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외부 샷시 등으로 바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며, 설치 위치 및 개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승강기,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입주자의 방범, 안전 및 편의성 등을 위하여 CCTV 카메라가 설치하였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등을 통해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 단지와 외부(동수원 한방병원 및 SK브로드밴드) 사이의 경계 담장을 준공 시 동수원 한방병원 및 SK브로드밴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및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 동등 이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시공 예정입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의 모양 및 색상, 건축물 색채디자인)을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 · 복리시설 등의 형태 및 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간에서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착공신고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 공간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견본주택 및 도면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냉장고장의 규격 및 마감은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불박이장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TV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도면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비노출면(가구, 거울, 육조 등)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주방가구 상부장 상부 및 후면,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아일랜드 장과 접하는 측면 및 하부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미 시공 됩니다.
- 거실 아트월은 줄눈 채움 없이 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 시공 됩니다.
- 평형별 가구에 적용된 하드웨어는 평형별 · 부위별 사양, 규격 및 디자인이 상이하므로 세부 사항은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 부위는 가구 사이즈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시공되는 배수 배관 및 소방배관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덕트 및 플렉서블 호스 등 관련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이며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 환기 방식으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되며(견본주택에는 미설치)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육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인테리어(가변형 벽체 등)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 재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의 마감색상이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 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시공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공계단 등) 등은 착공도서에 따르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유상옵션 품목이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 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항목 중 가구 조명, 슬라이딩 도어류는 실 시공 시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가전류, 전기 및 설비류 등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서 측벽, 세대 간벽의 두께 및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됩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및 탑승 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건축 착공신고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및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복도 및 부대·복리시설 천정고는 기계설비 배관,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공 시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설치 개수 및 설치 위치는 관련 도면을 기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나 아파트의 특성상 사용자 특성에 따라 향후 층간 / 세대 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 소비량, 단열 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실 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 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 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제 또는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재의 종류 및 부재 별 단열 성능은 법적 기준 내에서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하여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시설이 설치되는 공간(PD)는 입주 후 철거 또는 형상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 시 관할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의 형태에 따라 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므로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우물천정은 천장 내 설비 배관으로 인하여 천정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도어 설치 시 도어 상부에 '도어스토퍼'가 설치됩니다.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등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보일러가 설치된 곳까지만 설치되며, 주방에 가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 보일러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 시 필요한 소방 설비로 인하여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닥마루, 석재류, 타일류 등은 자재 특성에 따라 문양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및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마루는 스팀 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장기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뒤틀림 등의 우려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욕실 세면기, 양변기, 각종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품통, 주방 개수대 및 쿡탑 등 각종 설비, 각종 전기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환기 훈, 천장 점검구 위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세대에 연출된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치수는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 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현관 입구는 전시용 마감틀로 시공되었으며 본 시공 시 철제 단열 방화문이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문 및 세대 철제도어의 세부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 훌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며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 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전선 및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불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면 탑입에 따라 길이 및 탑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가 욕실 천장, 다용도실 천장 또는 가구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써 다른 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고 배기 성능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5층~지상2층 엘리베이터 훌 및 1층 로비에는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본 모집공고의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	
감리금액	1,892,000,000	267,000,000		338,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주상복합)입니다.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4-0001000	76,324,8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약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출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흄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10111-2867418
시행위탁자	대선건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60 (문래동6가)	110111-1085376
시공사	진흥기업(주)	인천광역시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110111-0006349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대선건설(주)와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신탁회사) (주)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진흥기업(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신탁재산(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대선건설(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인 대선건설(주)와 수탁자 (주)무궁화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인 대선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대선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인 대선건설㈜과 시공사인 진흥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b>견본주택 위치 :</b>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li><li><b>홈페이지 :</b> <a href="http://www.hyeongseongheilingtonplayeisdongswon.com">www.hyeongseongheilingtonplayeisdongswon.com</a></li><li><b>분양문의 :</b> 031-234-9010</li><li><b>주요일정</b></li></ul>					
	<table><tr><td><b>특별공급:</b> 2024.05.27.(월)</td><td><b>1순위 :</b> 해당/기타 지역 2024.05.28.(화)</td><td><b>2순위:</b> 2024.05.29.(수)</td><td><b>당첨자 발표일:</b> 2024.06.04.(화)</td><td><b>계약기간:</b> 2024.06.17.(월) ~2024.06.19.(수)</td></tr></table> <p>※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b>특별공급:</b> 2024.05.27.(월)	<b>1순위 :</b> 해당/기타 지역 2024.05.28.(화)	<b>2순위:</b> 2024.05.29.(수)	<b>당첨자 발표일:</b> 2024.06.04.(화)	<b>계약기간:</b> 2024.06.17.(월) ~2024.06.19.(수)
<b>특별공급:</b> 2024.05.27.(월)	<b>1순위 :</b> 해당/기타 지역 2024.05.28.(화)	<b>2순위:</b> 2024.05.29.(수)	<b>당첨자 발표일:</b> 2024.06.04.(화)	<b>계약기간:</b> 2024.06.17.(월) ~2024.06.19.(수)		